

서울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재나204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광선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B조합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22.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0. 5. 선고 2015가합3835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6나2072168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5. 11. 10. 피고를 상대로 ① 피고가 2004. 4. 8.자 420,000,000원 대출거래약정(이하 위 420,000,000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 대출금의 담보로 원고가 제공한 부동산을 경매한 후 경매 대가를 배당받아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420,000,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②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는데도 이를 대출하여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돈을 대출받게 한 후 기존에 C이 운영하던 D미곡처리장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3835), 위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게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재심 전 항소심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을 부당이득하거나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을 대출받게 하였거나, 부당한 변제 총당 내지 상계를 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72168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1. 25.자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7다268852), 그 판결이 2018. 2. 8. 원고에게 송달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① 피고가 허위 조작한 2004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2004. 4. 30.), ② 피고가 위조한 이행각서, ③ 피고가 허위 조작한 C의 2004. 4. 8.자 매출내역조회표(325,335,821원을 편집, 변조), ④ 피고가 허위 조작한 2004. 4. 8.자 판매품 원장, ⑤ 피고가 허위 조작한 녹취록, ⑥ 피고가 허위 조작한 대출거래약정서 및 거래신청서, ⑦ 증인 E의 허위 증언 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라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및 ‘증인 · 감정인 ·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원고가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26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2004. 3. 24. 이전까지 C(D미곡처리장)의 피고에 대한 정산대금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C이 2004. 1.부터 2004. 4. 8.이전까지 피고와 산물벼 거래를 함에 있어 C이 피고에게 산물벼 대금을 입금하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7. 8. 14.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2004. 4. 22. C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정산처리하여 더 이상 정산할 채권채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재심사유에 관하여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재다39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적하는 ① 2004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2004. 4. 30.), ② 이행각서, ③ C의 2004. 4. 8.자 매출내역조회, ④ 2004. 4. 8.자 판매품 원장, ⑤ 녹취록, ⑥ 대출거래약정서 및 거래신청서, ⑦ E의 증언 등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규정한 요건, 즉 위 증거들 내지 증언에 관하여 위조 내지 변조죄, 위증죄로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밖에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기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에 관하여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않은 때에도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268852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상고심에서 위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판단누락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2) 또한,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인 당사자는 그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2018. 2. 8.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위 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21. 11.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재심 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기도 하다.

3)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기한 이 부분 재심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앞서 든 관련 법리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된 원고의 2022. 9. 9.자 참고서면 및 그에 첨부된 자료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2022. 9. 9. '원고가 E을 위증으로 고소할 예정이고, 관련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21나68407호 사건에서 위 법원이 피고에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고소 결과 및 피고의 자료 제출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청구의 내용,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의 내용과 종류,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위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 등을

앞서 든 관련 법리 및 제반 사정과 종합해 보면,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채동수, 판사 송영승